

5.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하였습니까?

① 때 2026년 5월 21일~

② 장소 서울시 관내

③ 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후보 조전혁은 서울 관내에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등 성소수자 혐오표현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성소수자 시민 특히 아동청소년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엄연한 혐오표현이 선거용 구호로 게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혐오를 강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려,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의 옥외광고물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헌법 제21조 제4항을 고려해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적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개인적 인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하거나,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 등이 있어 민원이 제기된 경우 설치 중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2025년 11월)은 판단 근거로서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의 범위에 인종, 국적 이외에 '성적지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소수자 비하 등 편견·차별을 조장하는 단어나 문구를 사용할 때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고된 불법 현수막 등을 계고 없이 제거할 수 있고,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진정인은 혐오현수막 발견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를 통해 지자체에 신고했으나 즉각적인 철거는커녕 용산구는 다시 선관위에 물어 공식선거법을 이유로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구로구는 상위기관 유권해석 검토중이라며 선거 후로 처리기한을 두며 혐오 현수막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관기관들이 판단을 미루고 방치하는 동안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정서는 건잠을 수없이 퍼져가 성소수자 아동청소년들과 양육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혐오 현수막이 합법인 사회에서 누구도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학교 안에서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자신을 숨기거나 부정해야 합니다. 성소수자임을 드러내는 순간 폭력과 괴롭힘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교육 현장을 강화시키는 메시지의 해악을 멈춰주십시오. 성소수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혐오표현 현수막을 즉시 철거되도록 해주시고, 다시는 내걸리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6.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등에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성소수자 혐오 선동 현수막 신고 결과 <https://politicalmamas.kr/articles/5583/>

7. 첨부서류 : 있음 (서류명 : 별첨) 없음

진정인 _____ (서명 또는 날인)

* 아래 내용은 접수담당자가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수사기관 등에 진정·고소하면 조사 종결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음

20 년 월 일

접수담당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성소수자 혐오 현수막 사진



서울 구로구 운수동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부근

[첨부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공직선거법」 제67조 및 동법 규칙 제32조에 따라 선거운동 현수막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는 방법 등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신고 내용만으로는 같은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참여마당

참여마당 선관위 신문고 위반행위 신고

위반행위 신고

신고자 인적사항




성명	김정덕	작성일	2026-05-22 10:42	접수번호	위반행위신고-2026-5133
----	-----	-----	------------------	------	------------------

위반자 인적사항

성명	조전혁	위반자 신분	후보(예정자)
----	-----	--------	---------

위반 내용

제목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 혐오표현 현수막		
발생지역	서울특별시		
위반일자	2026-05-22	위반시간	09:23
위반장소	온수역 6번 출구 맞은편		
위반내용	<p>서울시교육감 후보 조전혁은 서울 관내에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등 성소수자 혐오표현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p> <p>성소수자 시민 특히 청소년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혐오표현으로 성소수자들의 인권침해 내용이 선거용 구호로 게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혐오를 강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p> <p>이는 행정안전부는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려,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의 옥외광고물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p>		
홈	알림홍보	선거법령	메뉴

첨부파일	 IMG_8716.jpeg [1.81 MB]  IMG_8721.jpeg [533.24 KB]  IMG_8722.jpeg [267.22 KB]
------	---

최종답변

담당자 이름	윤정빈
소속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 지도과
전화번호	027441390
답변	<p>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p> <p>귀하의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제67조 및 동법 규칙 제32조에 따라 선거운동 현수막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는 방법 등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신고하신 내용만으로는 같은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문의 현수막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철거 요구 등 조치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앞으로도 공명선거 실현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p>
첨부파일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

이전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담당부서: 조사총괄과, 정치자금조사과, 사이버조사과 / 02-3294-8513, 02-3294-8525, 02-3294-8544

홈페이지 관련 인터넷 문의:

[정치관계법 질의](#)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 [자유의견](#) [홈페이지 개선의견](#)

게시판 만족도

만족

대체로 족

알림홍보

선거/법령

메뉴

TOP

[첨부3]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현수막)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은 금지되는바 신고 내용만으로는 같은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 나의신고 ☰

신고내용

📷 캡처 후 공유
🔗 공유

신고번호	SPP-2605-2232567 (복사)
신고일시	2026.05.22 17:41
진행상황	답변완료
신고공유	공유
신고 발생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1가 1-6
신고내용 (복사)	<p>서울시교육감 후보 조전혁은 서울 관내에 귀여 동성애 교육 추방 등 성소수자 혐오표현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p> <p>성소수자 시민 특히 청소년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혐오표현으로 성소수자들의 인권침해 내용이 선거용 구호로 게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혐오를 강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p> <p>행정안전부는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려,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의 옥외광고물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color: #0072bc; border: 1px solid #0072bc; border-radius: 50%; padding: 2px 5px;">신고하기</p> <p>성소수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혐오표현 현수</p>

막을 즉시 철거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신문고 신고파일(사진·동영상) 촬영시간 및 경로 안내 *

* (1/1) G: 2026/05/22 10:41:53

* 발생지역 위도:37.54542488799631 경도:126.97544466953744

* G:휴대폰(안전신문고 앱 제외) 또는 PC에 저장된 사진·동영상

* C:안전신문고 앱으로 현장에서 촬영 후 바로 신고한 사진·동영상

* S: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 및 저장 후 신고한 사진·동영상

*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사진·동영상은 촬영 일시가 자동으로 표기되고, 위변조 방지기능을 탑재

((신고인 개인정보 보호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신고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신고처리 및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니 처리기관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접수경로 안내))

* 본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의 생활불편 **신고** 광고물 메뉴로 접수된 신고입니다. **신고하기**

처리결과

처리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지도과
담당자	이기준
연락처	02-744-1390
처리상태	수용
답변일	2026.05.30
처리내용	<p>음성듣기 만족도조사 완료</p> <p>○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p> <p>○ 귀문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현수막)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은 금지되는바, 신고하신 내용만으로는 같은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문의 현수막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철거 요구 등 조치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앞으로도 공명선거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추후 「공직선거법」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전화(국번없이 1390)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참여마당→정치관계법질의)로 문의하시면 자신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p>

처리현황

진행상태	완료
처리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접수일시	2026-05-28 10:00:32
처리에정일	2026-06-08 23:59:59
담당자	이기준(02-744-1390)

이송이력

행정안전부 → 용산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송기관	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송일시	
이송자	
이송사유	연계 시스템 자동 분류(ICSYSTEM)
이송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송일시	2026-05-27 15:07:54
이송자	이현희 (02-2199-7724)
이송사유	교육감 선거현수막의 내용을 이유로 특정 선거현수막의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함

[첨부4]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선거 현수막 문구와 관련해서는 상위기관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여 지침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처리예정일 2026-06-04 23:59:59

< 나의신고 ☰

신고일시	2026.05.22 17:38
진행상황	답변완료
신고공유	공유
신고 발생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107
신고내용 (복사)	<p>서울시교육감 후보 조전혁은 서울 관내에 귀어 동성애 교육 추방' 등 성소수자 혐오표현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p> <p>성소수자 시민 특히 청소년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혐오표현으로 성소수자들의 인권침해 내용이 선거용 구호로 게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혐오를 강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p> <p>이는 행정안전부는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려,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의 옥외광고물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p> <p>성소수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혐오표현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p>

신고하기

처리결과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환경국 가로경관과
담당자	윤남조
연락처	02-860-2968
처리상태	검토중
답변일	2026.06.02
처리내용	<p>🔊 음성듣기 👍 만족도조사 완료</p> <p>안녕하십니까? 구로구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드립니다.</p> <p>민원내용: 후보자의 선거현수막에 적힌 문구가 인권침해 혹은 성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금지광고물(불법현수막)에 해당.</p> <p>민원답변: 선거 현수막 문구와 관련해서는 상</p> <p>위기관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여 지침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p> <p>처리결과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로경관과 광고물정비팀 윤남조 주무관(☎02-860-2968)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구 도시미관 개선에 힘써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끝.</p>

신고하기

접수번호

SPP-2605-2232396(1AA-2605-1090769)

신청일자

2026-05-22 17:38:12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처리현황

진행상태	완료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접수일시	2026-05-26 08:47:08
처리예정일	2026-06-04 23:59:59
담당자	윤남조(02-860-2968)

이송이력

행정안전부 → 구로구

이송기관	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송일시	
이송자	
이송사유	연계 시스템 자동 분류(ICSYSTEM)